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866 아동복지법위반
피 고 인 이OO (740000-1000000), 음식물수거업
주거 경기 연천군
등록기준지 경기 양주군
검 사 최형원(기소), 한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문석(국선)
판 결 선 고 2013.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1998. 0. 00.생)의 친아버지로 경기 연천군 000에 있는 0000에서 음식물 수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1. 2010.경부터 2012. 8.경까지 위 0000에서 피해자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피고인의 음식물 수거일을 돕도록 강제하고, 피해자가 음식물 수거일을 돕는 날에는 15: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피고인이 음식물을 수거하는 일을 할 때, 피해자로 하여금 10 ~ 20kg 가량의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는 일에 종사시켜 아동의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 가. 2010. 이하불상경 위 0000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식물수거업을 돕는 것이 싫다고 하자 커터 칼심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협하였고, 같은 날 밤 불상의 시간경 경기 연천군 미산면 000 000-0에 있는 주거지에서 낮에 피해자가 커터 칼심을 피해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집 안에 있던 카메라 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나. 2011.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30만 원으로 옷 등을 사입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옆드리게 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다. 2012. 7. 2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수녀님을 만나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디디고 옆드리게 하는 자세(일명 '머리박아')를 취하게 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이○○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입소생정보관련자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¹⁾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각 신체손상 학대행위의 점 : 각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감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음식물수거일을 시킨 적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벌한 적도 없으며 다만 피해자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탈을 일삼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꾸짖은 적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 위 구법 시행일인 2012. 8. 4.경 이후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던 때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가 없었음.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목적이나 음식물 수거통을 나르게 한 목적이 피해자를 괴롭히기만 하려는 목적이었다가 보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훈육 목적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 수사기관, 보호시설에서 한 일관된 피해 진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중학교 때부터 지팡이 등으로 엎드리게 한 후 허벅지를 주로 때렸고, 본격적으로 때린 것은 2010년 이후이며, 음식물수거일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하여도 피고인 혼자 가면 지루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한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학교 여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생업을 위해 음식물수거일을 시키고, 훈육에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체벌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번의 결혼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실의에 빠져 불면증에 시달려 매일 술을 마셨고, 그때마다 어린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으며, 주말에는 자신의 음식물수거 일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음식물수거일을 시켜 그 과정에서 결국 피해자가 이를 견디다 못해 보호시설로 도피하여 드러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엄한 체벌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보호시설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여 결국 학업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매일 술을 마시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 훈육을 위한 체벌을 한다고 한 것이 그 한계를 벗어나 학대행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잘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전과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향후에도 음주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지속할 여지가 농후한 관계로, 보호관찰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도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판사 나청 _____